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88

발의연월일: 2020. 9. 17.

발 의 자:최혜영・인재근・오영환

송재호 • 아수진비) • 김영호

황운하 · 강준현 · 권칠승

기동민 · 김승원 · 김회재

김남국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은 질병, 부상,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·검사, 처치·수술 등의 요양급여를 직접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소요된 비용(요양비)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현재는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관이 가입자에게 요양비 명세서를 제공하고, 가입자가 이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그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또한,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당뇨병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지급대상 품목을 판매한 경우에는 구매자로부터 요양비 청구권한을 위임받은 후 요양기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단에 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반면, 요양기관이 아닌 판매업소에서는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. 이에 요양을 받은 가입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요양비 직접청구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요양비 제도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49조제3항, 제96조의2제3항 및 제96조의3제3항 신설).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양을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동의하는 경우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단은 요양을 실시한 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
제96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를 직접 청구한 기관은 요양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

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96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를 직접 청구한 기관은 요양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(요양비) ①・② (생 략)	제49조(요양비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양을
	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동
	의하는 경우 요양을 실시한 기
	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
	방법으로 공단에 요양비를 직
	접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
	단은 요양을 실시한 기관에 요
	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제96조의2(서류의 보존) ①・②	제96조의2(서류의 보존) ①・②
(생략)	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
	를 직접 청구한 기관은 요양비
	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
	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
	따라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
비른 제1 <i>0</i> 790후 그미기기나침비	를 보존하여야 한다.
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	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
일부개정법률 제96조의3(서류의 보존) ①·②	일부개정법률 제96조의3(서류의 보존) ①·②
(생략)	(현행과 같음)
(o	③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
<u>· La La?</u>	

를 직접 청구한 기관은 요양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